

## 〈수시공시〉

2025.03.04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자본시장법 제 19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)에 의거하여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해지됨을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### 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No.	펀드명
1	신영베테랑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 (모펀드:신영베테랑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)

### 2. 세부 내역

펀드명 1 (운용펀드)	펀드명 2 (투자자펀드)	협회표준코드 1 (운용펀드)	협회표준코드 2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
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  (모펀드:신영베테랑 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 )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A형	K55209CN1941  (모펀드:K55209C N1933)	K55209CN1958	2025.02.09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A-E형		K55209CN1966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A-G형		K55209CN1974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형		K55209CN1982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-E형		K55209CN1990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-G형		K55209CN2006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-Y형		K55209CN8524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-P형		K55209CN2014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-Pe형		K55209CN2022	
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-P2형		K55209CN2030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C-P2e 형		K55209CN2048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S형		K55209DF7772	
	신영베테랑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I형		K55209DK6538	

3. 해지 사유 : 소규모펀드 임의해지(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)

4. 해지 일자 : 2025년 3월 31일(월)

5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(<http://www.dis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